

라. 출석인정(학칙 시행세칙 제16조)

1) 출석인정 사유 및 신청자격, 신청기한, 제출서류

호	출석인정사유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 고
1호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현장견학	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학과 소속 학생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주관 학과 공문	- 교내축제, 교내 체육대회, 수학 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 는 경우 비대상 - 학과에서 출전 하는 공모전(대 회)은 비대상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한 자	〃	주관 사업단 공문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	관련 증빙서류	
	홍보대사 학교행사 지원	홍보대사	〃	관련 증빙서류	
2호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참여, 군입대 시험 응시 등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예비군 훈련 확인증 또는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재판으로 인한 법원 출석은 비대상
3호	본인의 상해나 질병	병원에 입원한 자,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학기중 3회 이상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	진료예시) 대학병 원 등의 진료로 진료일정을 환자 가 변경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하 는 상해나 질병
4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공유일 포함 5일), 형제자매(공휴일 포함 3일)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5호	마지막 학기에 등록된 졸업예정자가 취업 한 경우(채용연계형 인턴 포함, 정부지원사업 훈련연계형 인턴(3개월 이상))	취업자 (기간 제한 없음)	취업일로부 터 2주 이내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방학 중 취업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출
6호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하는 경우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 (수업일수의 1/2 이내)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관련 증빙서류	
7호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보건공결)	여학생, 매월 1회만 인정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없음	시험기간 제외,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
8호	학생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본인 5일, 자녀 3일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9호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		-

호	출석인정사유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10호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1호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정전염병(코로나19 등)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 증명서류	

2) 신청방법

-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에 출석인정 신청 입력 후, 출석인정신청서(담당교수 서명 필) 및 증빙서류 단과대학(학과사무실) 제출
- 2개 이상 단과대학 학생참가 행사의 경우: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3) 출석인정 기간

- 출석인정 사유를 모두 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단, 5호(취업)의 경우 기간 제한 없으며, 6호(특기자 출전 및 훈련)의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가능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4)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관련 유의사항

- 원격수업(xClass, iClass, iClass+, 블렌디드러닝 제외)은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